

# **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## **심사보고서**

2020년 6월 12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# 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출일자: 2020년 6월 4일
- 나. 제출자: 김현희 의원 외 8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6. 12.)

### **2. 제안설명 요지**

(제안설명: 김현희 의원)

#### **가. 제안이유**

강서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

#### **나. 주요내용**

- 1)[안 제1~2조] 목적 및 용어 정의
- 2)[안 제3조] 구청장의 책무 규정

### 3)[안 제4조]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 규정

-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
-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등

### 4)[안 제5조]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

### 5)[안 제6조] 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

- 인증받은 건축물을 매년 구 홈페이지 고시
- 인증받은 건축물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위한 알림 서비스 운영
- 인증받은 건축물 관리를 위한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

### 6)[안 제7~8조]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 규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나. 합의: 장애인복지과
- 다. 기타: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: 의견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내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,

- 이번 조례안 제정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 거쳐 구청장의 책무·교육 및 홍보 등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,
-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,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판결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## 8. 수정안의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부칙조항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

### 나. 수정내용

부칙 본문을 제1조(시행일)로 하고,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

**참 고****수정안 조문 대비표**

제 정 안	수 정 안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생략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유효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## 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 · 아동 · 심신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· 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 6. (생략)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

기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23조(보조금의 교부)**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· 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· 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.

## 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**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**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·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 · 절차, 인증기관 지정 기준

· 절차, 인증 비용의 부담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**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**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 12. 3.>

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 12. 3.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
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·절차, 인증기관 지정 기준·절차, 인증 비용의 부담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